

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동의과학대학교 자체 지원 기준안

1. 사업 목적

-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

2. 운영 기간: 1학기(2025년 3월~8월), 2학기(2025년 9월 ~ 2026년 2월)

3. 지원 내용
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
* 매학기 최초 1개월분(3, 9월)은 20만 원 정액 지원

- 지원 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▪ 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·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
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
*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*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- 지원 기간: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, 학제별·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

구 분		학제 별·개인 별 한도 기준				
한도 부여 방식	학제 별 한도	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리대학 입학전 타대학 수혜 실적 제외
		한도	4회	6회	8회	
	학생 별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 별 누적 한도 8회* 부여 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리대학 외 타대학 수혜 실적 합산 	
타장학금 수혜 실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수혜실적은 별도 합산하지 않음 				
<예시 사례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대 3년(6회)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후 전문대에 입학한 경우 전문대 재학 중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2회까지 수혜 가능 				

※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,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함

4. 지원 대상

□ 지원 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
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생
- 2025년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'85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학생
 - * 단, 1월 1일 출생자(주민등록상)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
-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학생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
 - *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
- 신청 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(아래 표 이외 지역)에 해당하는 학생

권역별	원거리 인정 제외 범위
【부산·울산권】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·김해시·창원시·거제시·밀양시

○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
구분	성적 기준
신·편입생, 재입학생	○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재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전학기 12학점(전공심화 6학점) 이상 이수자로 총점평균 70점 이상 ○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
5. 인원 배정 (예산 배정액 초과시 인원 배정 기준 적용)

선발 인원 배정은 다음과 같고 정원 미달시 타 영역으로 이월 가능

* 미달 정원 인원 이월 우선 순위: 1순위 신입생군, 2순위 재학생군, 3순위 편입생군

○ 재학생군(우리대학 직전학기 원성적이 있는 학생) : 전체 배정 인원의 70%

○ 신입생군 : 전체 배정 인원의 25%

* 신입생군: 신입생 및 신입학한 첫학기 휴학 및 제적 처리 후 복학·재입학한 학생

○ 편입생군 : 전체 배정 인원의 5%

* 편입생군: 편입생 및 편입학한 첫학기 휴학 및 제적 처리 후 복학·재입학한 학생

6. 우선 지원 기준 (예산 배정액 초과시 우선 지원 기준 적용)

순위	항 목	비 고
1	○ 비기숙사생	
2	○ 기숙사생	
3	○ 소수집단 학생 중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주민가정	
4	○ 성적 상위순 - 재학생군: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 - 신입생군: 입학성적 우수자순 - 편입생군: 직전대학 전체학기 총점평균	직전대학 전체학기 총점평균: 재출한 성적증명서상 총점평균 기준 적용
5	○ 소득구간 낮은 학생	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
6	○ 학년 높은 순	
7	○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동점자 처리 지침에 준하여 동점자 처리	
총 점		100

7. 지원 제외 기준

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 외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할 수 있음

○ 3월, 9월 학적 변동 발생시 전부 지원 제외

-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을 위하여 8월 및 2월 10일 이후 지급 요청 건
-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(지급 요청, 소명 제출 등) 미준수 시
- 비기숙사 주거 학생이 지원 기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후 대체 임대차 주거지 미확보시 발생일 기준 차기월 분 지원금은 지원 제외
- 기숙사 주거 학생이 지원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대체 임대차 주거지 미확보시 발생일 기준 차기월 분 지원금은 지원 제외